

대구경북혈액원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간호사 채용 공고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비정규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5. 12.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

<필독사항>

- ※ 채용공고(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자가 입력(제출)한 정보를 근거로 서류전형을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허위로 입력(제출)하거나 잘못 입력(제출)하여 최종 제출(증빙)서류와 입력(제출)정보가 다를 경우 최종합격 결정시 탈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직종	채용형태	채용인원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근무지역
간호직	대체인력	1명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담당업무) 채혈업무	대구경북혈액원 헌혈의집 포항센터

2. 근로조건

- 계약기간 : 2026. 6. 15. ~ 2029. 10. 31.
 -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며, 휴직자 복직일 전일을 계약만료일로 함.
- 근로시간 : 10:00 ~ 19:00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연장근로 및 주말·공휴일 근무가능 한 자
 - ※ 헌혈의집 운영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은 편성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 약3,035,500원/월 (대한적십자사 보수운영규정에 따름)
- 근무지 : 헌혈의집 포항센터(포항 북구 중앙로 273 스타타워 5층)

3. 응시 자격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4.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 출 서 류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사 지원 시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위 과정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한함 * (예시) ①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상위 학위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학사' 서류 제출 ② 학사 학위 소지자(전문학사 소지자는 예시 ① 적용): 상위 학위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학사' 서류 제출 ③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 심화 과정 이수: '전문학사' 서류 제출 - 성적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백분율 환산이 표기가 있어야함

	○ 간호사 면허증명서(★필수항목) / ※ 면허증 인정불가 - 보건복지부 http://lic.mohw.go.kr. 접속 후 면허(자격)증명서 또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 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근무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2종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함 - 재직자의 경우 [재직 증명서] 제출 시, [경력 증명서]를 대체함 - 단시간 근로경력자의 경우 경력기간 및 주 근무시간 필히 명시 ○ 주민등록초본: 개명자, 병역 의무자(병적 사항 포함) ○ 우대특례사항 증빙자료: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자기 개발 증빙자료 - 어학성적, 관련 자격증, 헌혈확인증명서, 봉사활동확인서, 표창장 등
※ 유의사항 ※ - 블라인드 채용에 기반하여, <u>각종 제출서류에 ‘이름’ 또는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성별, 나이, 출신학교, 학교명, 사진 등)가 포함된 서류는 삭제 후 제출</u> - <u>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사진촬영으로 식별 불가능한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u>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에서 제외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원본(블라인드 해제) 제출 * 진위여부 확인 예정 - 모든 증빙 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모아, zip 파일로 첨부 파일에 등록	

5. 배점기준 (※해당자는 관련 서류 필히 제출)

가. 합격자 결정 지표

지표	직종별 지표 (100점)						가점지표 (15점)	
	기본점수	성적	어학	업무 관련 자격증	적십자 관련 자격증	업무 경력	사회봉사 활동	RCY활동, 표창 및 포상
배점	20점	50점	5점	10점	5점	10점	7점	8점

나. 서류심사 지표

구 분	서류 심사 지표
공 통	◦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경력에 있는 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함

구 분	서류 심사 지표
전문직	◦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위 과정 성적 (백분율 점수) ◦ 어학 성적 보유자(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단,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예정일까지 유효하다면 해당 점수도 인정함. 토익 600점(NEW TEPS는 텡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따른 점수를 적용),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정보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 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 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채용 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 합격)하였으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임용 예정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응급처치강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수화통역사 ◦ 면허 취득 이후 적십자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월 초과 경력(초단시간 경력 미인정)

- ※ 모든 가산점 반영 요소는 **증빙 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되며, **증빙 자료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별도 제출 받아 진위를 확인함 (제출 방법은 서류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 ※ **성적의 경우 반드시 백분율 환산 점수를 기입하여야 하며 추후 졸업(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백분율 환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
- ※ 사회봉사 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
- ※ 가산점 반영은 **채용 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하고 임용예정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봉사 활동 실적, RCY 경력, 표창 이력, 근무 경력에 한함
- ※ 어학 성적은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임용 예정일기준으로 유효한(취득 후 2년) 점수만 인정함
- ※ 단,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예정일까지 유효하다면 해당 점수도 인정
- ※ 직종별 가산점 반영 요소 중 항목별 중복 적용 불가
(예) 정보 분야 관련 가점 자격증 중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소지→가점이 높은 자격증 1개 인정
- ※ 공통 가산점 반영 요소 중 중복 적용 **불가** 사항

- RCY 경력 가점 항목과 RCY 활동으로 수상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가점 항목
-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과 헌혈로 인한 사회봉사 활동은 중복 적용이 불가
단,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이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헌혈로 인한 봉사 시간은 최대 120시간까지 제외하며 초과분만 인정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 활동 확인서 중 동일 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중복 등록된 경우)

※ 편견요소 포함 정보 수집 사유

- 어학성적 : 직무수행 시 의학 전문 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 응대 등
- 학력, 전공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 학점 :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 성적(학점)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5. 12.(화) ~ 2026. 5. 27.(수) 18:00까지(마감시간 준수)

※ 마감시간은 우리사 사이트 서버시간에 근거함

나.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 각종 증빙 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모아, zip 파일로 첨부 파일에 등록

7. 주요 일정

구 분	시행일시	세부내용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2026. 5. 12.(화) ~ 5. 27.(수) 18:00	- 우리사 홈페이지, 잡알리오(공공기관 채용 정보) -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서류 심사	2026. 6. 1.(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1.(월)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6. 6. 4.(목)	- 대구경북혈액원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9.(화)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채용신체검사	2026. 6. 12.(금) 까지	- 최종합격자에 한함
임용(예정)일자	2026. 6. 15.(월) 예정	

※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수시 체크 요망)

8. 전형방법

가. 1차 서류 심사(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고득점 서열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총점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다대다 종합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 4)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

9. 서류심사 우선 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 및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10. 전형별 가점 대상자(해당자는 관련서류 필히 제출)

구분	우대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	

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11. 기타사항

- 가. 면접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되며, 개인정보(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가 들어간 제출서류는 면접관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 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아.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재신체검사 또는 치료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 비용은 혈액원에서 부담합니다.
- 자. 동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제반규정과 인사관리지침 및 채용기준을 준용합니다.

12.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총무팀(053-605-5610)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2026. 5. 12.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

(붙임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